



2024. 9. 5.(목) 09:30

제306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

# 검 토 보 고 서

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운 영 위 원 회  
전 문 위 원 윤 선 기

# 남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

## 1. 제안경과

- 발의년월일 : 2024. 8. 23.
- 발 의 자 : 이진환 의원 등 9인

## 2. 제안이유

- 교섭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교섭단체의 효율적 기능 수행을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 
(안 제5조)

## 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1
- 나. 예산조치 : 붙임2 (비용참조)
- 다. 관련부서 : 의회사무국

## 5. 검토의견

-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근거하여 교섭단체의 의정활동 시 경비 등 필요한 사항을 의장의 지휘·감독에 따르도록 명시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## 「지방자치법」

## 제63조의2(교섭단체)

- ①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다. 이 경우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.
-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 중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의원은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.
- ③ 그 밖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

##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### 1. 재정수반요인

제5조(지원)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의 지휘·감독에 따른다.

### 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남양주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제1호

### 3. 미첨부 사유

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

### 4. 작성자

의회사무국 운영전문위원 윤선기